

# 단시간근로자

## 근로계약서

주식회사 000 (이하 “사업주”라고 한다)와 근로자 000 (이하 “근로자”라고 한다)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상호 신의의 원칙하에 이를 성실하게 이행,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### 제 1 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유효하다.

### 제 2 조 (근무장소 및 종사할 업무)

- 근무장소 : 사업장 소재지 및 업무담당 지역
- 담당업무 : 의 제반업무
- “근로자”는 “사업주”의 사업과 관련하여 “사업주”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“사업주”는 업무내용을 지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또는 단위업무별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. 단, “사업주”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“근로자”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 3 조 (근로시간 및 휴게)

|      | ( )요일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근로시간 | 00 시 ~<br>00 시              |
| 휴게시간 | 00 시 00 분<br>~ 00 시<br>00 분 |

- ① “사업주”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“근로자”를 근로시킬 수 있다.
- ② “사업주”는 “근로자”에게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, “근로자”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
#### 제 4 조 (임금)

- ① “사업주”가 “근로자”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수당은 연봉계약으로 한다.
- ② “사업주”와 “근로자”의 연봉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해당년도 말까지로 하며, 해당기간이 만료될 경우, “근로자”의 연봉액은 “사업주”가 통보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③ “근로자”의 연봉총액은 00000원으로 하고, 12등분으로 균분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단,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.

#### ④ 연봉의 구성 (예시)

구분	금액	비고
기본급	1,400,000 원	
식대	100,000 원	비과세수당
월급여	1,500,000 원	
연봉	18,000,000 원	월급여 X 12

- ⑤ 월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 단, 중도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해당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, 결근·지각·외출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 5 조 (휴일)

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.

1. 주휴일 : 일요일(1 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)
2. 근로자의 날(5 월 1 일)
3. 기타 “사업주”가 정하는 날
4. ‘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서 정한 공휴일 (단,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제외)

## 제 6 조 (휴가)

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
## 제 7 조(수습기간)

-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입사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둔다.
- ② “사업주”는 아래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1. “근로자”가 “사업주”에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면접시에 진술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
  2.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,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정규사원 급여의 90%를 지급한다.

## 제 8 조(책임과 의무)

“근로자”는 근무기간 중 부여된 직무수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“사업주”의 직원으로서 품위와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. 또한 본인의 업무를 이용하여 “사업주”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재직 중 경쟁업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제 9 조(기타사항)

-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“사업주”가 정한 제규정에 따른다.
- ② “근로자”는 본 계약으로 인한 연봉 및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사업상, 재산상의 비밀을 계약기간 중

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“근로자”는 퇴사를 원할 경우 최소 30 일 이전에 “사업주”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0000 년 00 월 00 일

사업주	사업체 명	
(인)	대표이사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	

근로자		
(인)	이름	주민등록번호
	주소	